

시민안전보험 용어정의

-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교통수단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전철, 기차, 선박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익사 사고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만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

- 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
- ②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미아찾기 지원금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 미아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약정액의 2배 추가 지급

▶▶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사고 보상금

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사고에 지급하는 일당 보상금. 90일 한도로 지급

시민안전보험 Q&A

▶▶ 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스쿨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포함

▶▶ 경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보상가능

▶▶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가능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됨

문/의/처

경주시 안전정책과 779-6513

Golden City
Gyeongju



2019년 6월 1일부터
경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자동가입되는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경 주 시

시민안전보험 계약 사항

- ▶ **피보험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 **가입절차** :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
- ▶ **보험기간** :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
-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 **문의** : 보험사 및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13)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구분 | 담보 및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사망 | · 자연재해(일사·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상해후유장해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 1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 등급 1~5급)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미아찾기 지원금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100만원 |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사고 보상금 | 만13~18세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 상태에 있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 일당 10만원 |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신청

-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후유장해** : 장애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 **보험금 신청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신청

※ 보험금 신청서식 :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 → 정보마당>규정 및 서식>사업별 공제서식

-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 : 02-6900-2200, 팩스 : 0505-136-0128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경주

시민안전보험 용어정의

▶▶▶ 자연재해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저체온증)에 해당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